

의 안 번 호	1819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	------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0. 1.(금)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1. 10. 1.(금)
-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21. 10. 14.(목)

2. 제안설명 요지(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가.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계획 및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에 따라 체육시설 감면 규정 및 사용료 반환 규정을 개정하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본어식 표현 등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를 법령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명시 (안 제8조)
 - 100분의 50경감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 유의증자, 5. 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가족
-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 마련 (안 제9조)
 - 취소 시 반환 규정
 - (현 행) 7일전 전액, 6일전 ~ 사용전날 사용료 100분 50
(개정안) 5일전 전액, 4일전 ~ 사용전날 사용료 100분 10
 - 사용자 반환기준 마련 : 사유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 반환

다. 근거법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미경)

-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계획 및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 사항을 반영하고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근 거 법 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법 제6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 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0과 같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법 제23조에 따라 고궁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 한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0조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과 같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① 법 제5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

1. 5 · 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2. 5 · 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 · 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5 · 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 · 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법 제74조에 따른 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는 “특수임무유공자”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은 “특수임무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으로 본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사상자. 다만, 의사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2.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3. 의사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때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의상자증이나 의사자 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활동 보조자의 경우에는 의상자의 의상자증 제시로 이를 갈음한다.
-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 ②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제1항에 따른 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제6항에 따른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이용료나 교습비의 반환) 체육시설업자는 법 제2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용료나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의 교습비(이하 “이용료”라 한다)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별표 3의2의 이용료의 반환기준에 따라 해당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이용료의 반환을 지연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 이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해야 한다.